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04호 2018. 1. 26.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3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2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82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 5
- 삼척시 공고 제87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6
- 삼척시 공고 제94호 개간사업시행계획 (변경)승인고시 ----- 9
- 삼척시 공고 제105호 제 19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 12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18 - 13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말소) 등의 사유로 부여(폐지)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1. 26.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공양왕길 393 외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
 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1. 2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
 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봉황로 137-6 (교동)	폐지	20180126	건물철거	20090626	지형지물(봉황산)명칭활용	
2	강원도 삼척시 봉황로 137-15 (교동)	폐지	20180126	건물철거	20090626	지형지물(봉황산)명칭활용	
3	강원도 삼척시 봉황로 137-23 (교동)	폐지	20180126	건물철거	20090626	지형지물(봉황산)명칭활용	
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산13, 산3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공양왕길 393	20180126	건물신축	20090626	공양왕릉(문화재) 명칭 활용	
5	강원도 삼척시 향교길 12-9 (교동)	폐지	20180126	건물철거	20090626	문화재(삼척향교)명칭활용(기존도로명)	
6	강원도 삼척시 향교길 16 (교동)	폐지	20180126	건물철거	20090626	문화재(삼척향교)명칭활용(기존도로명)	
7	강원도 삼척시 향교길 22-18 (교동)	폐지	20180126	건물철거	20090626	문화재(삼척향교)명칭활용(기존도로명)	
8		이	하	여	백		
9							
10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비고
		주소	계	주소	7 건				
폐지	1	강원도 삼척시 봉황로 137-6 (교동)		폐지		20180126	건물철거	20090626	지형지물(봉황산)명칭활용
폐지	2	강원도 삼척시 봉황로 137-15 (교동)		폐지		20180126	건물철거	20090626	지형지물(봉황산)명칭활용
폐지	3	강원도 삼척시 봉황로 137-23 (교동)		폐지		20180126	건물철거	20090626	지형지물(봉황산)명칭활용
부여	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산13, 산3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공양왕길 393		20180126	건물신축	20090626	공양왕릉(문화재) 명칭 활용
폐지	5	강원도 삼척시 향교길 12-9 (교동)		폐지		20180126	건물철거	20090626	문화재(삼척향교)명칭활용(기존도로명)
폐지	6	강원도 삼척시 향교길 16 (교동)		폐지		20180126	건물철거	20090626	문화재(삼척향교)명칭활용(기존도로명)
폐지	7	강원도 삼척시 향교길 22-18 (교동)		폐지		20180126	건물철거	20090626	문화재(삼척향교)명칭활용(기존도로명)

삼척시 공고 제2018-82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3항 및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8년 1월 19일

삼척시장

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비고
<input type="checkbox"/> 복사용지 62원 (A4용지 1매당 기준) <input type="checkbox"/> 라벨용지 257원 (라벨용지 1매당 기준)	<input type="checkbox"/> CD 1,190원 (CD 1장당 기준)	

삼척시 공고 제2018-87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였으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18.01.19. ~ 2018.02.02 (15일간)
3. 말소일자 : 2018.01.19.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박영○
	주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498-1
	조립식판넬 (1층:38.76㎡ 주택)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1. 19.

삼척시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p> <p>삼척시장 귀하</p>		
비 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p>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p>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

삼척시 공고 제2018 - 94호

개간사업시행계획 (변경)승인고시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산84-2번지의 개간사업 시행을 농어촌 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1. 22.

삼척시장

1. 사업명 :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개간)

2. 사업시행자

- 주소 : 삼척시 **길 **-**(**동 ***** **호)

- 성명 : 이 * *

3. 사업내용

- 위치 :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산84-2
- 지목 : 임야
- 지적 : 750㎡
- 승인면적 : 556㎡
- 개간의 용도 : 개전
- 사업기간 : (변경) 승인일로부터 2018. 07. 31. 까지
(당초) 승인일로부터 2017. 12. 31. 까지

- 부 칙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지전용허가 협의내역 및 조건

1. 협의내역

협의번호	소재지				협의사항		복구비예치(천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원)	수허가자
	읍면리	지번	지적	면적	용도	기간			
협의 16-14호	근덕면 궁촌리	산84-2임	750㎡	556㎡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	2016.01.29. ~ 2016.12.31.	면제	면제	이**
변경 17-30호	근덕면 궁촌리	산84-2임	750㎡	556㎡	개간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2016.01.29. ~ 2017.03.31.	면제	면제	이**
변경 17-47호	근덕면 궁촌리	산84-2임	750㎡	556㎡	개간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2016.01.29. ~ 2017.05.31.	면제	면제	이**
변경 17-82호	근덕면 궁촌리	산84-2임	750㎡	556㎡	개간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2016.01.29. ~ 2017.12.31.	면제	면제	이**
변경 17-178호	근덕면 궁촌리	산84-2임	750㎡	556㎡	개간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등락전환 측량에 의한 지적선 일부 변동	2016.01.29. ~ 2017.12.31.	면제	면제	이**
변경 18-04호	근덕면 궁촌리	산84-2	750	556	개간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2016.01.29. ~ 2018.07.31.	면제	면제	이**

2. 협의조건

- o 산지전용면허세 납부(4종) : 개간사업시행계획 변경승인시 별도 고지서 송부
- o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으로 개전 목적의 맞게 산지전용 협의한 면적에 대하여 부지정리 후,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준수하여 과실수(감나무, 대추나무 등)를 100본 식재 및 토사측구 L=184m를 시공 완료 후, 복구설계승인 신청 및 복구준공검사 신청.
- o 산지전용 구역경계 표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적사업 착수로 인한 연접토지 피해를 방지하고, 편입구역에 대한 경계표시는 백색페인트(수목등의 고정물에 폭 10cm이상 5m이내 간격으로 표시, 고정물이 없을 경우 깃발 등으로 표시)로 명확히 하여 누구나 분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중에 경계 표시가 망실되거나 퇴색할 경우 즉시 보완조치.
- o 사업구역 경계를 침범하거나 상기의 조건을 미이행하여 허가취소, 작업중지, 등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산지 경계의 침범 등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됨을 유의하여 작업인부, 장비기사 등 공사관계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

- 본 사업지와 연결하여 있는 토지(인접 주택지, 도로)등에 토사유출,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재해예방시설(침사지, 토사유출방지책, 방진망 등) 설치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 복구설계서의 승인은 복구계획서와 복구설계서에 포함된 공중·공법 등으로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복구공사 착수하여야 함.(※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에 복구설계서 제출)
- 사업계획부지내 포함되는 모든 토지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인·허가(개발행위허가 등)를 받은 후 산지전용하여야 하며, 산지관리법 제16조의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 까지 발생하지 아니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별표6의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업시행
 - 산지전용 후 발생하는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사업추진토록 하고, 이 경우 수직높이 5m(옹벽포함)마다 1m이상의 소단을 조성하여야 하며, 최초 소단의 높이는 2m이하로 하고, 옹벽의 청단부 폭은 소단폭에 합산되지 아니함.
 -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면안정대책 및 경관조성 또는 생태복원을 위하여 보호공 및 녹화공법 등 자연친화적인 복구대책을 수립 후 사업시행
- 재해예방시설은 사전에 설치하여 주변지역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
- 본 사업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
- 사업수행 중 본 산지에서 불을 놓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작업인부들의 라이더, 성냥, 담뱃불, 용접불뚝 등 관리 철저)
- 본 사업장에 산림관련법에 의한 공무수행 등으로 관계공무원이 출입을 원할 경우 통제하여서는 아니되며, 현장대리인 등으로 하여금 현장안내 및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금회 허가사항은 산지편입조서에 명시된 필지별, 면적별 내역에 한하며, 면적의 증감 등 변경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반드시 사전 변경허가 절차 이행. 끝.

삼척시 공고 제2018-105호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제19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1. 25.

삼척시장

제19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1. 2018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계과)
2. 일본식 한자어 정비 일괄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3.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기획감사실)
4. 삼척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행정과)